

「한국은행 경남본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기준」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규정」,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 및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에 의해 한국은행 경남본부에 배정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이하 “<u>경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u>”이라 한다)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이하 “세칙”) 및 「<u>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u>」(이하 “절차”)에 따라 <u>한국은행 경남본부에 배정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u>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차 신설 -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대외명칭 삭제
<p>제2조(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대상 금융기관) 경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다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대출실적을 대상으로 지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상남도 소재 금융기관이 서울특별시 이외 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운전자금대출 및 시설자금대출 실적 2. 서울특별시 소재 금융기관이 경상남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운전자금대출 및 시설자금대출 실적 	<p><u>< 삭제 ></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지역외 소재 업체 지원 규정 삭제후, 절차 제3조제1항에서 규정
<p>제3조(경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구분 운용) 경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전략지원한도, 특별지원한도 및 일반지원한도로 구분하여 운용한다.</p>	<p><u>< 삭제 ></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칙 제3조제1항에서 규정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4조(지원대상) ① 경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지원대상은 금융기관이 <u>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사업장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u> (이하 "지원대상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취급한 <u>일반운전자금대출 및 시설자금대출 취급실적</u>을 기준으로 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창업기업 2. 벤처기업 3. 혁신기업 4. 녹색기업 5. 연구개발 우수기업 6. 추천기업 7.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 8.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9. 전입기업 10. 수출관련기업 11.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12. 농림수산업 관련기업 13. 명절·재해 자금 14. 기타 지원기업 15. 경기부진·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 <p>② 지원대상업체의 세부 선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p>	<p>제2조(지원대상) ① 경남본부에 배정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의 지원대상은 <별표1>에서 정한 지원부문 및 선정기준을 충족한 경우로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2>에서 정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제외업종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 올림 - 조문정리 - 취급가능한 대출종류에 대한 내용을 절차에서 규정
<p>< 신 설 ></p>	<p>제3조(사후심사 자료제출) 경남본부장은 절차 제5조에 따른 사후심사시 금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출금원장(사본) 2. 사업자등록증(명)(사본) 3. 금리산출표(사본) 4. 지원대상업체 입증 서류(유관기관 인증서 및 추천서, 확인서 등) 5. 기타 경남본부장이 요청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심사 자료제출 명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 style="text-align: center;"><u>< 신 설 ></u></p>	<p>제4조(평가관리 기준) 절차 제6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리 감면폭(30%) 2. 제출자료의 정확성(20%) 3. 대출취급실적 및 소명자료, 사후심사 자료 등의 제출기한 준수 여부(20%) 4. 제도에 대한 이해도 및 규정 준수 여부(20%) 5. 제도 운영관련 협조도(10%) 	<p>- 금리감감효과, 업무협조도 제고를 위해 평가관리 기준 마련</p>
<p>제5조(전략지원부문) ① 제4조 제1항 제7호, 제8호, 제12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업체를 경남본부의 전략지원부문으로 지정한다.</p> <p>② 전략지원부문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최대배정가능액”이라 한다)을 배정한다.</p> <p>③ 전략지원부문은 업체당 15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30억원) 이내에서 배정한다.</p> <p>④ 전략지원부문 업체당 최대배정가능액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제3항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p> <p>⑤ 한국은행 경남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의 40% 이상에서 전략지원한도 운용규모를 정할 수 있다.</p> <p>⑥ 제5항의 전략지원한도 운용규모를 소진하여 전략지원부문 지원대상업체에 대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배정할 수 없을 경우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해당 대출실적에 대하여 50% 이내로 일반지원한도를 비례 배정하며 신용등급 제한은 제6조제6항에 따른다. 다만 업체당 지원한도는 제3항을 적용하고 배정액은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p> <p>⑦ 제6항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배정받은 대출실적은 금융기관 대환 등을 통해 제2항 및 제3항에 정한 방식으로 지원을 전환할 수 없다.</p>	<p style="text-align: center;"><u>< 삭 제 ></u></p>	<p>- 상위 규정인 세칙 및 절차에 명시</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6조(특별지원부문) ① 제4조 제1항 제15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업체중 경남본부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특별지원부문으로 지정하며 경남본부는 특별지원 한도 배정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취급 계획을 제출받을 수 있다.</p> <p>② 본부장은 특별지원한도 운용규모를 정할 수 있다.</p> <p>③ 본부장은 제2항의 특별지원한도 운용규모 이내에서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금(만기 1년 이내의 원화금융자금대출금 중 일반운전자금대출에 한정한다)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한다.</p> <p>④ 특별지원부문은 업체당 10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20억원) 이내로 배정한다.</p> <p>⑤ 특별지원부문 업체당 최대배정가능액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제4항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p> <p>⑥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9조의 업무보고서 별책서식 중 「여신종별 신용등급별 월중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 및 가산금리 현황」(B2512-2)에 따른 신용등급 1~3등급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특별지원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SOHO 기업에 대해 기업여신 신용등급 외의 별도 신용등급을 적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⑦ 특별지원한도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가 특별지원한도 총 운용규모를 초과하여 특별지원한도로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해당 대출실적에 대하여 50% 이내로 일반지원한도를 비례 배정한다. 다만 업체당 지원한도는 제4항을 적용하고 배정액은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p>	<p style="text-align: center;"><u>< 삭제 ></u></p>	<p>- 상위 규정인 세칙 및 절차에 명시</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7조(일반지원부문) ① 제5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을 제외한 지원대상업체를 일반지원부문에 지정한다.</p> <p>② 제5조에 따른 전략지원부문 및 제6조에 따른 특별지원부문에 대해 배정하고 남은 한도를 일반지원부문에 배정한다.</p> <p>③ 일반지원부문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 이내에서 최대배정가능액을 기준으로 비례배정한다.</p> <p>④ 일반지원부문은 업체당 7.5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15억원) 이내에서 배정한다.</p> <p>⑤ 일반지원부문 업체당 최대배정가능액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제4항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p> <p>⑥ 제6조 제6항은 일반지원한도의 배정에도 적용한다.</p> <p>⑦ 제5조 제2항 및 제3항, 제6조 제3항 및 제4항 그리고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배정한 후 미소진한도가 있을 경우 금융기관별 배정액의 구성비에 따라 재배정한다.</p>	<p>< 삭제 ></p>	<p>- 상위 규정인 세칙 및 절차에 명시</p>
<p>제8조(지원일몰제도) ①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지원기간 만료 후에도 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시설자금대출은 최초대출일로부터 최장 5년간 지원하되 동 기간 내 연장이 가능하며, 토지만 구입하는 경우에는 시설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p> <p>② 제1항의 누적지원기간이 5년(60개월)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지원을 2년간 중단한다. 다만, 지원기간동안의 연환산 월평균 지원액의 누적지원금액(지원기간동안의 월별 지원금액의 합계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20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신규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지원실적은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지원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에 따라 신규 지원이 중단된 업체에 대해 신규지원을 재개하였을 경우에는 신규지원 재개시점부터 새롭게 지원실적을 계산한다. 다만, 신규지원 중단기간동안 자금을 수혜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을 신규지원 재개시점 이후의 지원실적에 포함한다.</p> <p>④ 본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A1)”, “명절·재해 자금(A14)”중 재해자금, “기타 지원기업(A15)”은 신규지원 중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p>	<p>< 삭제 ></p>	<p>- 상위 규정인 세칙 및 절차에 명시</p>
<p>제9조(명절·재해자금 및 기타 지원기업) 본부장은 제4조 제1항 제13호(명절·재해자금) 및 제14호(기타 지원기업) 지원시 지원대상, 지원한도, 지원비용 및 지원기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p>	<p>< 삭제 ></p>	<p>- <별표1>의 주석 4로 이동</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10조(지원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은 경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대상 대출실적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최종부도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2. 「은행업감독규정」에서 정한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에 대한 대출금 3. 다른 규정 등에 의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한국은행 자금이 지원되는 대출금 4.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금으로부터 자금이 지원되는 대출금(이차보전대출 제외) 5. 폐업업체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대출금 6. 마이너스통장식 대출, 한도거래대출 등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대출금 7. 부동산업, 유흥업 및 개인서비스업 등 <별표2>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에 대한 대출금 	<p><삭제></p>	<p>- 상위 규정인 세칙 및 절차에 명시</p>
<p>제11조(자료제출) ① 금융기관이 경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배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 및 자료를 매월 10일까지 한국은행 경남본부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은행 경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한국은행 경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요약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 3. 한국은행 경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신규취급실적 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 4. 한국은행 경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변동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 5. 창업중소기업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 6. 기타 본부장이 요구하는 배정 관련 자료 <p>②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지원한 대출의 만기도래, 중도상환, 원 차주의 폐업업체 또는 최종부도거래처 지정 등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한국은행 경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변동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보고하여야 한다.</p>	<p><삭제></p>	<p>- 지방중소기업지원 대출 취급실적 명세(T9) 신설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p>
<p>제12조(자금의 회수 및 배정) 본부장은 매월 첫 영업일에 전월중 각 금융기관에 배정한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함과 동시에 제11조의 보고서 및 자료에 의해 산정한 당월중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해당 금융기관의 결제모집 앞으로 일괄 배정한다.</p>	<p><삭제></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13조(제재) ① 본부장은 제11조에서 정한 보고서 및 서류 등을 허위 또는 착오로 작성·제출하여 경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과다 또는 부당하게 수혜한 것으로 판명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과다 또는 부당하게 수혜한 지원자금의 즉시 회수 과다 또는 부당하게 수혜한 지원자금 적수의 2.5배 이내에서 위규사유별로 배정한도 감축 <p>가.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 및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에 대한 대출, 대출금 증도상환보고 누락 및 지연 : 2.5배 이내</p> <p>나. 폐업업체에 대한 대출 : 1.5배 이내(기업체의 폐업신고 지연(또는 소급) 사실 인정시 국세청에 등록된 폐업일로부터 지연(또는 소급)신고일까지는 1배수 차감)</p> <p>다. 최종부도거래처에 대한 대출 등 : 2배 이내</p> <p>② 제1항의 제재 등으로 회수된 한도는 제재를 받지 않은 여타 금융기관에 직전 3개월간 평균 최종배정액의 금융기관별 구성비에 따라 재배정한다.</p>	<p>< 삭 제 ></p>	<p>- 상위 규정인 세칙 및 절차에 명시</p>
<p>제14조(기타 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규정」,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 및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등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p>	<p>제5조(기타 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규정」,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및 <u>「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u> 등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p>	<p>- 조 올림</p> <p>- 절차 신설에 따른 대출 규정 추가</p>
<p>< 신 설 ></p>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 <2024. 3. 21.></u></p> <p><u>제1조(시행일)</u> 이 기준은 2024년 4월 1일 금융기관 대출취급분부터 시행한다.</p> <p><u>제2조(경과조치)</u>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u>중전 기준</u>을 적용한다.</p>	<p>- 부칙 신설</p> <p>- 시행일 명시</p> <p>- 경과조치 마련</p>

현행		개정안		비고																																																																				
<p><별표1></p> <p style="text-align: center;">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전산 코드</th> <th>지원부문</th> <th>선정기준¹⁾³⁾</th> </tr> </thead> <tbody> <tr> <td>A1</td> <td>창업기업</td> <td>-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중 제조업(KSIC 업종코드 10~34) 또는 아래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창업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단 동 시행령 제4조 해당업종은 제외 (금융기관 영업점장 및 결제모점장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확인)</td> </tr> <tr> <td>A2</td> <td>벤처기업</td> <td rowspan="10" style="text-align: center;">(생 략)</td> </tr> <tr> <td>A3</td> <td>혁신기업</td> </tr> <tr> <td>A4</td> <td>녹색기업</td> </tr> <tr> <td>A5</td> <td>연구개발 우수기업</td> </tr> <tr> <td>A6</td> <td>추천기업²⁾</td> </tr> <tr> <td>A7</td> <td>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td> </tr> <tr> <td>A8</td> <td>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td> </tr> <tr> <td>A9</td> <td>전입기업</td> </tr> <tr> <td>A10</td> <td>수출관련기업</td> </tr> <tr> <td>A11</td> <td>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td> <td>- 「<u>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u>」 제13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선정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u>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u>」 제14조에 따른 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u>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u>」 제15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 선정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u>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u>」 제34조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신뢰성인증 마크를 획득한 기업</td> </tr> </tbody> </table>		전산 코드	지원부문	선정기준 ¹⁾³⁾	A1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중 제조업(KSIC 업종코드 10~34) 또는 아래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창업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단 동 시행령 제4조 해당업종은 제외 (금융기관 영업점장 및 결제모점장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확인)	A2	벤처기업	(생 략)	A3	혁신기업	A4	녹색기업	A5	연구개발 우수기업	A6	추천기업 ²⁾	A7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	A8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A9	전입기업	A10	수출관련기업	A11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 「 <u>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u> 」 제13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선정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 <u>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u> 」 제14조에 따른 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 <u>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u> 」 제15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 선정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 <u>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u> 」 제34조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신뢰성인증 마크를 획득한 기업	<p><별표1></p> <p style="text-align: center;">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¹⁾³⁾</p> <table border="1"> <thead> <tr> <th>지원대상 코드</th> <th>지원대상</th> <th>지원부문</th> <th>선정기준</th> </tr> </thead> <tbody> <tr> <td>A1</td> <td>창업기업</td> <td>일반지원부문</td> <td>-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중 제조업(KSIC 업종코드 10~34) 또는 아래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창업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단 동 시행령 제4조 해당업종은 제외</td> </tr> <tr> <td>A2</td> <td>벤처기업</td> <td>일반지원부문</td> <td rowspan="10"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r> <tr> <td>A3</td> <td>혁신기업</td> <td>일반지원부문</td> </tr> <tr> <td>A4</td> <td>녹색기업</td> <td>일반지원부문</td> </tr> <tr> <td>A5</td> <td>연구개발 우수기업</td> <td>일반지원부문</td> </tr> <tr> <td>A6</td> <td>추천기업²⁾</td> <td>일반지원부문</td> </tr> <tr> <td>A7</td> <td>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td> <td>전략지원부문</td> </tr> <tr> <td>A8</td> <td>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td> <td>전략지원부문</td> </tr> <tr> <td>A9</td> <td>전입기업</td> <td>일반지원부문</td> </tr> <tr> <td>A10</td> <td>수출관련기업</td> <td>일반지원부문</td> </tr> <tr> <td>A11</td> <td>소재·부품·장비 <u>소재·부품·생산기업</u></td> <td>일반지원부문</td> <td>- 「<u>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u>」 제13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선정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u>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u>」 제14조에 따른 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u>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u>」 제15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 선정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u>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u>」 제34조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신뢰성인증 마크를 획득한 기업</td> </tr> </tbody> </table>		지원대상 코드	지원대상	지원부문	선정기준	A1	창업기업	일반지원부문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중 제조업(KSIC 업종코드 10~34) 또는 아래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창업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단 동 시행령 제4조 해당업종은 제외	A2	벤처기업	일반지원부문	(현행과 같음)	A3	혁신기업	일반지원부문	A4	녹색기업	일반지원부문	A5	연구개발 우수기업	일반지원부문	A6	추천기업 ²⁾	일반지원부문	A7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	전략지원부문	A8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전략지원부문	A9	전입기업	일반지원부문	A10	수출관련기업	일반지원부문	A11	소재·부품·장비 <u>소재·부품·생산기업</u>	일반지원부문	- 「 <u>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u> 」 제13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선정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 <u>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u> 」 제14조에 따른 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 <u>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u> 」 제15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 선정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 <u>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u> 」 제34조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신뢰성인증 마크를 획득한 기업	<p>- 조문정리</p> <p>- 지원부문 추가</p> <p>- 창업기업 관련 별지 제5호 서식 삭제</p> <p>- 지원대상(A11)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p>
전산 코드	지원부문	선정기준 ¹⁾³⁾																																																																						
A1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중 제조업(KSIC 업종코드 10~34) 또는 아래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창업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단 동 시행령 제4조 해당업종은 제외 (금융기관 영업점장 및 결제모점장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확인)																																																																						
A2	벤처기업	(생 략)																																																																						
A3	혁신기업																																																																							
A4	녹색기업																																																																							
A5	연구개발 우수기업																																																																							
A6	추천기업 ²⁾																																																																							
A7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																																																																							
A8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A9	전입기업																																																																							
A10	수출관련기업																																																																							
A11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 「 <u>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u> 」 제13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선정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 <u>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u> 」 제14조에 따른 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 <u>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u> 」 제15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 선정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 <u>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u> 」 제34조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신뢰성인증 마크를 획득한 기업																																																																					
지원대상 코드	지원대상	지원부문	선정기준																																																																					
A1	창업기업	일반지원부문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중 제조업(KSIC 업종코드 10~34) 또는 아래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창업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단 동 시행령 제4조 해당업종은 제외																																																																					
A2	벤처기업	일반지원부문	(현행과 같음)																																																																					
A3	혁신기업	일반지원부문																																																																						
A4	녹색기업	일반지원부문																																																																						
A5	연구개발 우수기업	일반지원부문																																																																						
A6	추천기업 ²⁾	일반지원부문																																																																						
A7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	전략지원부문																																																																						
A8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전략지원부문																																																																						
A9	전입기업	일반지원부문																																																																						
A10	수출관련기업	일반지원부문																																																																						
A11	소재·부품·장비 <u>소재·부품·생산기업</u>	일반지원부문		- 「 <u>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u> 」 제13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선정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 <u>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u> 」 제14조에 따른 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 <u>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u> 」 제15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 선정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 <u>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u> 」 제34조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신뢰성인증 마크를 획득한 기업																																																																				

현 행	개 정 안	비 고
-----	-------	-----

<별표1>

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

전산 코드	지원부문	선 정 기 준 ¹⁾³⁾
A13	농림수산업 관련기업	(생 략)
A14	명절·재해 자금	
A15	기타 지원기업	
A16	경기부진 및 경기민감 업종 영위기업	

주 : 1) 인증 또는 계약 등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취급일자가 관련 인증 또는 계약 등의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하며, 인증서 등에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선정일(또는 인증일)로부터 3년간 유효

2) 유관기관 추천업체의 경우 업종별 자금지원 형평성, 경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상업체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3) 해당 기업이 복수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 주된 사업은 매출액,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업종, 사업계획서의 순서에 따라 결정한다.

<별표1>

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¹⁾³⁾

지원대상 코드	지원대상	지원부문	선 정 기 준
A13	<u>농림수산업 관련기업</u>	<u>전략지원부문</u>	(현행과 같음)
A14	<u>명절·재해 자금 등 필요기업⁴⁾</u>	<u>일반지원부문</u>	
A15	기타 지원기업 ⁴⁾	<u>일반지원부문</u>	
A16	경기부진· 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	<u>특별지원부문</u>	

주 : 1) 금융기관의 대출실행일이 관련 인증 또는 계약 등의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함

2) 유관기관 추천업체의 경우 업종별 자금지원 형평성, 경남본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상업체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3) 지원대상업체가 복수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함

4) 경남본부장은 지원비율·지원한도·지원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

- 제출서류 인정기준 및 복수 업종 영위기업의 주된 업종 판단 기준 명확화

- 현행 제9조의 내용을 각주 4에서 규정

현 행	개 정 안	비 고
-----	-------	-----

<별표2>

경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 제외업종

업종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제10차) ¹⁾
주점업	56211 일반 유흥주점업
	56212 무도 유흥주점업
	56213 생맥주 전문점
	56219 기타 주점업
금융관련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68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682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	71101 변호사업
	71102 변리사업
	71201 공인회계사업
	71202 세무사업
보건업	861 병원
	862 의원
무도장	91291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91241 복권발행 및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미용업	96111 이용업
	96112 두발 미용업
	96113 피부 미용업
	96119 기타 미용업
안마업	96122 마사지업

<별표2>

한국은행 경남본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제외업종¹⁾²⁾

업종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제10차)
<u>운송관련 서비스업</u>	52915 주차장 운영업
주점업	5621 주점업
<u>금융 및 보험업</u>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u>전문서비스업</u>	711 <u>법무관련 서비스업</u>
	712 <u>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u>
<u>교육 서비스업</u>	855 <u>일반 교습학원</u>
<u>보건업</u>	86 <u>보건업</u>
<u>오락관련 서비스업</u>	9112 <u>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u>
	9124 <u>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u>
	91291 무도장 운영업
<u>기타 개인 서비스업</u>	9611 이용 및 미용업
	96122 마사지업
	96129 <u>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u>

- 조문정리

- 제외업종 추가

주 : 1) (생 략)

주 : 1) (현행과 같음)
 2) 업체가 복수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함

<별지 제1호 서식>

한국은행 경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신청서

(년 월 일)

한국은행 경남본부장 귀하

은행 부(점)장 (인)

I. 신청내용

대출취급액	백만원	대출기간	~
금리	고정 : %	대출계좌번호	자금종류 <input type="checkbox"/> 운전자금 <input type="checkbox"/> 시설자금
	변동 : % (기준금리 ΔΔ + 가산금리 □%)		
채권보전형태	<input type="checkbox"/> 순수신용 <input type="checkbox"/> 담보 <input type="checkbox"/> 보증기관 보증 <input type="checkbox"/> 혼합	신청사유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대환 <input type="checkbox"/> 만기연장 <input type="checkbox"/> 지원연장
지원부문	△△△△ (신청 전산코드 :)	전략지원부문 해당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취급점 및 담당자	OO지점, OOO (☎ , FAX)	특별지원부문 해당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I. 업체현황

업체명		대표자 확인	(인)
주소	(☎ , FAX)		
자금담당자	e - mail		
업종명 (KSIC 5자리코드)	△△△△ (□□□□□□)	신용등급 (은행자재 등급)	
자금용도	설립일		
주 생산품	사업자등록번호		
상시종업원수	명	법인등록번호	
매출액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총 자산	백만원	(납입자본금)	(백만원)

III. 첨부서류

1. 대출금원장(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지원대상업체 입증 서류(유관기관 인증서 및 추천서 등) 1부
4. 기타 한국은행이 요청한 서류. 끝.

- 지방중소기업지원 대출
취급실적 명세(T9) 신
설에 따라 삭제

< 삭제 >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별지 제3호 서식>

한국은행 경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신규 취급실적 보고서

(년 월중)

한국은행 경남본부장 귀하

은행(회) 부(점)장 (인)

(백만원, 연%)

신청정보				업체현황				대출내역			

주 : 1) ~ 15) (생 략)

< 삭 제 >

- 지방중소기업지원 대출 취급실적 명세(T9) 신설에 따라 삭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별지 제4호 서식>

한국은행 경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변동보고서

(년 월중)

한국은행 경남본부장 귀하

은행(회) 부(점)장 (인)

(백만원, 연%)

변동전보고내역					변동보고내역				

주 : 1) ~ 5) (생 략)

< 삭 제 >

- 지방중소기업지원 대출 취급실적 명세(T9) 신설에 따라 삭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 data-bbox="114 199 291 223"><별지 제5호 서식></p> <p data-bbox="405 236 676 268" style="text-align: center;">창업중소기업 확인서</p> <p data-bbox="416 274 665 300" style="text-align: center;">(년 월말 현재)</p> <p data-bbox="123 347 409 373">한국은행 경남본부장 귀하</p> <p data-bbox="123 451 913 531">아래 업체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창업의 범위에 해당됨을 확인합니다.</p> <p data-bbox="165 611 297 636">— 업체명 :</p> <p data-bbox="165 662 297 687">— 대표자 :</p> <p data-bbox="165 713 392 738">— 사업자등록번호 :</p> <p data-bbox="165 764 322 790">— 설립일자 :</p> <div data-bbox="152 826 947 1129"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data-bbox="159 842 938 927">※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p> <ol data-bbox="185 965 927 1078" style="list-style-type: none">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p data-bbox="748 1086 911 1107" style="text-align: right;"><내용 일부 생략></p> </div> <p data-bbox="515 1209 694 1235"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data-bbox="539 1315 792 1340" style="text-align: center;">은행 지점장(인)</p>	<p data-bbox="1368 774 1491 799" style="text-align: center;"><삭 제 ></p>	<p data-bbox="1868 247 2123 304">- 심사 전산화에 따라 삭제</p>